인권정보자료실
Md1.39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 청 회

◉ 일 시 : 2000. 4. 18(화) 오후 2 : 00 - 5 : 00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

◉ 공동주최 :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가입단체 32개단체(34개지부) 공동주최)

◉ 후 원 :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32개단체 34개지부)

강릉YMCA 강릉YWCA 강릉농아인협회 강릉오성학교어머니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원DPI 경남여성회-성가족상담소 경실련(강릉) 기독교윤리실천운동강릉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동해YWCA 마을주민 옥계면 남양1리 반부패강릉연대
속초YWCA 원주YWCA 영동정신지체부모회 월드비젼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좋은친구선교회 지체장애인협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참여자치치강릉연대
춘천YWCA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맹인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장애인회
대구여성장애인회 빛장을여는사람들 충북여성장애인회 인천여성장애인회준비위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준비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지회 인천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구미여성의전화준비위원회
순천여성의전화준비위원회 부천여성의전화준비위원회 목포여성의전화준비위원회)

Md1.39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 청 회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자립도모협회, 한국성폭력(경남지역) 상담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 **일 시 : 2000. 4. 18. (화) 오후 2 : 00 - 5 : 00**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

▣ **진행순서**

사회 :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 **개 회** : 사회자
- **사례 1** :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행 사례'
  황옥주(좋은 친구 선교회 회장)
- **사례 2** : '정신지체인 성폭행 사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발제 1**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정책적대안'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발제 2** : '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
  조창영(장애우인권쎈터 원장, 변호사)
- **토론 1** : 이상덕(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
- **토론 2** : 심영희(한양대학교 사회학과교수)
- **종합토의**
- **성명서발표** : 송지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차 례>

발제 1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정책적 대안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발제 2 : 법률적 대안
조창영(장애우인권센터원장, 변호사)

사례 1 :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행 사례
강릉여성의 전화

사례 2 : 정신지체인 성폭행 사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 록 : 성폭력특별법 전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Ⅰ. 들어가며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1. 성폭력의 현황
2. 성폭력에 대한 피해 인식과 대처방법
3. 피해의 영향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및 그 특성
1. 성폭력의 원인
2.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한해 동안 성범죄는 6,174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2.5배가 증가했고 성범죄율도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율이 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된 건수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간의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 여성단체들의 추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추방운동의 결실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UN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신혜수, 1994)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1] 문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설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들과 부모, 자원활동자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성계나 장애계에서 조차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열악한 환경임을 나타내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 할 수 없거나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 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결과 임신하여 여아를 출산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의 정신지체 여성 K양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실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안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접촉으로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가정폭력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개념정의하기로 한다.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실태

1. 성폭력의 현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1997)에 의하면 15.9%의 여성장애인이 성적인 수치를 느낄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정신지체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성폭력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조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성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후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일선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그 현황 파악이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료의 제한 속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에 이슈화되었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들과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의 상담기록(한국성폭력상담소 16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건, 시설비리백서 5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건,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2건, 여성장애인성폭력 관련 연구논문[2] 6건, 기타 2건 등 총 40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표1) 피해 당시의 연령과 장애유형

피해당시연령	장 애 유 형					계
	정신지체	청각·언어	시각	지체	기타(정신질환)	
10세 미만	2					
10 - 20	15		1			
21 - 30	7	1	2	3	1	
31 - 40		1	1	3	2	
40세 이상				1		
계	24	2	4	7	3	

ㄱ. 연 령

성폭력 피해 당시의 연령을 보면 10세 미만이 2명, 10-20세가 17명, 20세 이상의 성인이 21 명 등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피해 비율이 47.5%로 갈수록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46.4%)가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추이

2) 하숙자,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숭실대석사학위논문, 1998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ㄴ. 장애유형[3]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가 25명, 지체장애 7명, 언어·청각 장애 2명, 시각장애 3명, 기타 2명으로 정신지체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1997년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보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장애유형에는 청각 24.8%, 시각 15.2%, 지체 13.6%의 순(정신지체 제외)이었는데, 어떠한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범죄에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2) 피해유형

피해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29명, 성추행이 10명, 기타 가정폭력이 1명으로 강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유형 현황인 강간 33.5%, 성추행 21.9%, 기타 44.6% (최영애, 1999)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고, 성추행이나 가정폭력, 언어 폭력 등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 더욱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도 함께 추론해 볼 수 있다.(표2 참조)

표2)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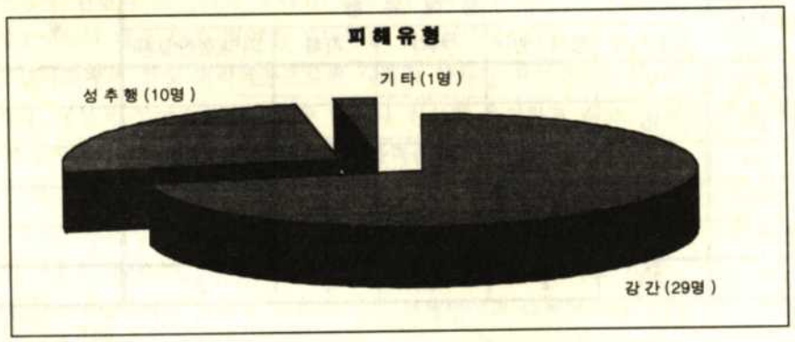

3) 장애유형은 2000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를 따르지 않고 그 이전 분류체계인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등의 범주로 나누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성폭력 피해 사례와 이슈화 된 사건들이 개정 이전의 장애인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37명, 모르는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실제로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조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9명으로 나타났는데, 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에 의해 성폭력이 일어나며 이번 사례분석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설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집단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이 시설비리 백서에서 밝혀지고 있다.(표3 참조)

표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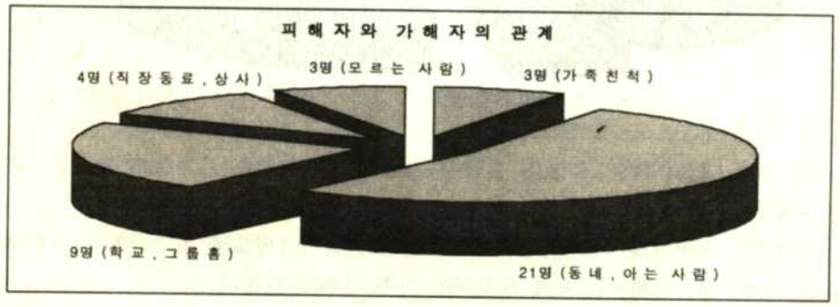

4) 발생상황

ㄱ. 발생장소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7명, 가해자의 집 9 명, 시설 및 학교가 9명, 직장(안마시술소 포함) 3명, 여관 2명, 낯선 곳 2명, 기타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과 평소 잘 알고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표4)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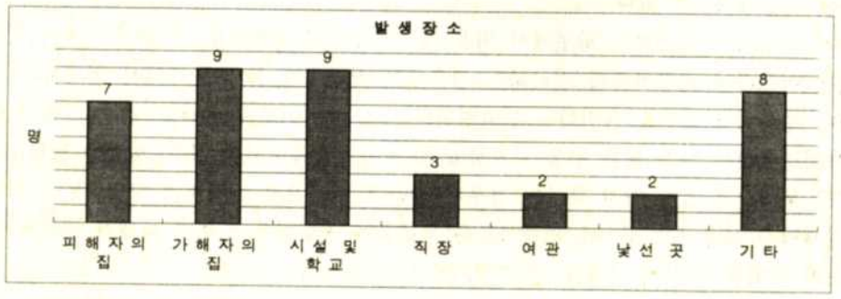

ㄴ. 피해상황과 가해방법

가해방법으로는 과자, 돈 등으로 유인 7명, 친분관계 이용 14명, 혼인빙자 강간 3명, 구타, 폭력 등 강제력 사용이 15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5) 가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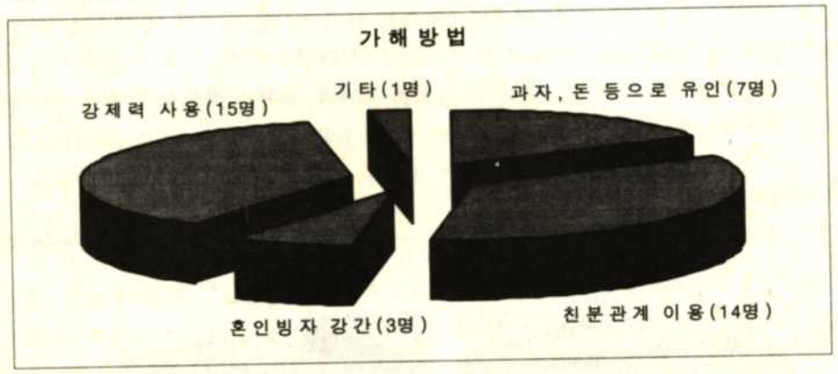

ㄷ. 가해자의 수

가해자의 수는 1명이 36명, 2명이 3명, 3명 이상이 1명으로 최고 7명의 가해자가 한사람의 정신지체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

ㄹ. 피해의 빈도 (지속성 여부)

피해의 발생빈도는 1회 5 명, 2회 3 명, 3회 2 명, 수 차례 (지속적)가 30명으로 대부분이 2회 이상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6년 이상이나 지속된 경우가 2명이나 있었다.

2. 성폭력에 대한 피해 인식과 대처방법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 인식측면에서는 위에 소개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해자가 접근하는 방법에서 먹을 것 등 보상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폭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사례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지체여성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구타, 폭력, 감금 등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며 피해가 반복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40명의 피해자 중에서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해 온 경우는 불과 6명에 불과 했다. 나머지 34명은 가족이나, 동네주민, 시설관계자 등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경우였다.

40명 중 의료적 처치가 확인된 경우는 불과 3명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기 때문에 외상의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도 해석되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지원 체계가 빈약함을 동시에 알 수 있다.

법적인 면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드물고,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고 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고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한 경우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여러건 있었다. 특히 법적인 대응은 피해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3. 피해의 영향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본 분석대상에 포함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40사례는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사례들이므로 구체적인 피해의 영향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 후유증은 한 층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 후유증 - 강간피해자(29명)들은 대부분 성기주변의 심한 염증과, 처녀막 파열 등의 손상을 입고, 임신하여 낙태 (5명)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1명)한 경우도 있다. 폭력을 동반한 경우 그 후유증으로 사망(1명)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두통, 방광염, 불면증,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정신적 후유증 - 성폭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감, 불안, 우울증, 분노 등을 느끼며 수치심, 환각, 환청 등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있다.

사회적 후유증 - 대인관계에서 공포나 남성기피, 가족과의 밀착 등이 나타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자위, 과잉 성행동, 자해, 공격 행동 등이 나타나고, 가해자가 직장상사 일 경우 일터에서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신지체 자매(6, 8세)가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후 그 행위를 사촌동생들에 자행하려고 함.

▶ 25세의 정신지체 여성이 동네 노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성기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바지를 잘 벗음. 또한 아버지의 눈을 피로며 오빠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가 외출하면 울고 성격이 난폭해 짐.

▶ 안마시술소 원장이 시각장애여성 안마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이 살자고 협박하자 도망 보내 옴.

▶ 30대의 청각장애 여성이 이웃집 남자에게 두 번에 걸쳐 강간당한 후 임신하여 낙태를 하고 심 더럽혀졌다는 자책감과 남편에게 미안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자살시도.

▶ 산속에 혼자 살고 있던 60대 지체장애 할머니가 동네 사람에게 강간당하고 구타당하여 그 충격과

▶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주부가 몸도 성치 않은데 비장애인 남편 대신 생계를 유지하고 살면서 물만 폭력에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당한 상태.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원인과 특성

1.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신혜수, 1994)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빈곤의 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극단적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은 그 만큼 성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2. 성폭력의 특성

앞서 소개한 여성장애인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특성[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에서 드러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드러난 사례의 피해유형을 볼 때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열악한 환경 속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4)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지만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성적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5)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조치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체계가 빈약하다. 장애에 대한 외부 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 가해자 처벌, 금전적 보상 등 사건해결 중심적으로 대처할 때 피해자는 소외되곤 한다. 피해보상을 받고도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6)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염려하는 주변사람들이 성적인 피해를 더욱 은폐하려 한다.

4) 조중신(1999),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참조

7)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분노, 무력감, 자기포기 등의 감정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성적 피해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대략적인 실태와 그 원인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여성장애인 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장애인 단체, 기타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금년에 실시될 예정인 정부차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실태조사에서는 양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인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삽입되고 98년 개정된 조항에는 시설여성장애인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진 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줄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4.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 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 등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특히 일선의 성폭력관련 상담기관과 장애인기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개입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신변안전이 보장되고 주거서비스와 피해여성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나 보호시설로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기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을 포함한 기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6.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돼야 한다

우선 장애의 영역별 (지체, 언어청각, 정신지체, 시각 장애 등)로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장애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튼튼한 지원체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8.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돼야 한다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돼야 한다.

9.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뒷받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두어야 한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 돼 있고 그 피해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부는 물론 여성, 장애인 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연대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인권

(1995),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1997), 여성장애인 상담사례 보고서

(1997), 여성장애우 전국 실태조사 발표회

(1998), '98 여성장애우 상담 사례집

(2000), 장애우 상담 길라잡이

하숙자(1998),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숭실대석사학위논문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자료집

(1999),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에 대한 폭력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

조창영(장애우인권센타 원장, 변호사)

I. 서 론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하는 데 이때의 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과 일반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가 있다.

그런데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비장애 여성과 똑같은 정도의 폭행, 협박수단을 구성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 여성에 대하여는 그 범죄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성폭행범을 좀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 처벌을 위한 위 일반 형법과 위 특별법의 적용요건 및 그 적용에 따른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처벌규정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동 법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이 1997. 8. 22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단지 "신체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인 상태의 여자로만 규정하여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범은 동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일반 형법의 준강간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동 조항이 명백히 정신상의 장애여성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 동 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가 문제다. 이를 명백히 규정하여 주는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규정하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개념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
일본 고법 판례는 심신상실 여성을 "지능지수 52 정신연령 6년 10개월, 생활연령 13년 3개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규정을 들 수 있다.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을 때에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없이 동의를 받고 성행위를 하였어도 강간 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신능력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겠다.

2.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계, 위력이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학설은 심신미약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자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III. 문제점

(1) 형법 제302조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성폭력 특별법과 다른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하여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그리고 위계,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성폭행이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여성 자신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기소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가 실무 조사상 매우 어렵다.

(3)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형법 제302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수사 실무상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내에 피해여성에 대한 정신장애 감정을 한뒤 신체감정서를 첨부하여 성폭력 특별법 위반죄로 고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4)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중에서 정신지체 여성의 의사표현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5) 입법론적으로는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를 성폭력 특별법에 새로이 신설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에는 수사 실무상 동 조항의 위계, 위력을 보다 넓고 완화되게 해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례 발생시에는 인권단체들의 연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력 사례

최은경(강릉여성의전화)

1. 사건접수

2000년 1월 4일, 강릉여성의전화(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강릉지부)는 여성신문사로부터 강릉시 옥계면 남양 1리에서 정신지체 인 듯한 K양(21세)이 7여년간 여러명의 마을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임신중이라는 사건을 접하였다.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았던 여성신문사 박이은경 기자와의 수차례 전화통화로 강릉여성의전화에 우선 접수된 내용은 일회성이라해도 치명적인 성폭력이 7년동안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피해자 K양이 상황 판단과 언어 전달력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7명의 가해자 중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H씨를 K양과 동네주민이 고소.고발한 결과가 K양의 부모님이 H씨와 200만원의 합의 및 고소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된 상태였다. 그리고 오히려 기죽어 지내야 하는 피해자측과 마을주민들을 협박하고 다니는 가해자 H씨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짐을 전해 들은 이승민씨(서울. 보습학원을 운영)가 여성신문사에 제보한 것이다.

2. 사건현장 방문

1월 10일, 여성신문사 박이은경 기자, 민원기 사진기자, 강릉여성의전화 최성래 공동대표(현재 상임이사), 최은경 간사, 좋은친구선교회 황옥주회장(강릉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사회사업가)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1리를 방문하였고 마을이장, 부녀회장, 피해자 K양의 가족을 포함한 마을주민 100여명이 더욱 심각해진 K양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노인회관 앞에는 '패륜적 범죄자들, 이 마을을 떠나라. 홍00, 임00, 김00....'의 내용이 담긴 마을주민들이 게시한 플랭카드가 누군가에게 찢기어져 있었다.

(1) 마을주민들의 진술

1999년 6월 초 K양이 H씨의 소개로 동해의 한 남자와 사실혼에 있은지 4개월이 지

나 임신 7개월임이 확인된 10월 1일 친정으로 쫓겨 오게 되면서 K양은 사실혼에 있기 전 최근 알고 지내던 마을아주머니에게 '우리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영자씨 외 2명의 마을분들이 상담을 시작하였고 H씨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성폭행 당했으며- 『"H씨와 성관계를 했느냐?", "잤느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음과 성관계의 뜻을 몰라 "아니요"』, 『"그럼 그 짓을 했느냐?" "연애를 했느냐?"는 질문에 "예"』, 『"H씨를 처벌해줄까?"라는 질문에 '처벌'의 뜻을 몰라 '감옥'을 설명하니 그때서야 "예"』라고 답했다 - 동해에서 쫓겨온 다음날까지 여러명에게도 성폭력당했다고 하였다. K양과 이를 도와준 분들은 처벌을 원하는 K양의 의견에 따라 범죄가 가장 크다고 판단한 - K양이 H씨를 감옥에 보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 - H씨를 우선 고소하기로 했다. 본인을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 H씨는 K양의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내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임신 7개월인 K양을 낙태시키려 동해, 강릉 등의 산부인과와 조산원으로 데리고 다녔고 고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K양과 나의 성관계 내력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버스종점, 노인회관 등에 게시하였고 마을 이장에게 보내지면서 사건은 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다. 그 문서에는 K양과의 첫 관계에서부터 다른 남자들과도 관계를 가졌다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가해자들의 이름이 거론된 문서는 마을회의에서 H씨가 찢어버렸다고 한다. 현재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내력서 1부 남음)

이에 마을 주민들은 곧 마을 회의를 소집하였고 문서에 나와있다는 H씨 외 6명의 가해자들을 불러 K양과의 관계를 물어본 결과 모두들 K양과의 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사건이 더욱 심각하며 더 이상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평소에도 K양과 그의 가족들이 모자라서(평소 마을주민들은 그들을 진생이라고 표현하였음. 4남 1녀, 모두 정신지체로 의심) 이 사건을 해결못한다며 K양과 가족을 도와 가해자 중 범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H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1999년 11월 25일 강릉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준비를 하려는 중에 경찰의 "고발을 시끄럽게 한다고. 변호사 사가지고 한다하니 해봐야 돈 몇십만원, 살아봐야 삼개월 살면되고 이십만원벌금 물고 나올텐데 구태여 거액 들이고 하지말라 하던데요"(마을이장)라는 말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조사과정에도 경찰이 사건현장을 찾기보다는 참고인(7명의 가해자)들만 경찰서를 갔다 왔다고 한다. 그러던 12월 22일, 가해자 H씨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법원은 '노환' 등의 이유로 불구속 되면서 결국 200만원 합의와 고소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사건이 종결되자 마을주민들은 "전혀 죄의식없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다. 동네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남자는 그럴수 있다. 열 기집을 마다하지 않는다. 남자는 그럴수 있다는 것은 동네 모든 여성들은 자기네들 놀이개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네여자들을 농락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마을주민 김영자), "가해자 H씨가 동네를 쑥밭으로 만든다는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었어요"(남양이장), "나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여자들의 ××를 찢어놓겠다(H씨의 협박)""내가 마을을 떠나도 누구 한사람 죽여놓고 가겠다(L씨의 협박)"라는 가해자들에 대한 특히 H씨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이장과 마을주민들은 내 비용 써가며 욕 얻어먹어가며 다녔는데 결국엔 포기하는 상태가되었으나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 상당히 반갑다. 다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단체에서 적극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2) K양 부모님의 진술

아버지 말에 의하면 본인은 최근에 이런 사실들을 알았으며 K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13, 14세로 추정됨. 부모님은 딸의 나이를 잘 모르는 상태) 뽕밭에서 처음 성폭력 당했고 두 번의 낙태도 했다고 한다. 한번은 K양이 배가 아퍼 병원에 가려는 걸 안 H씨는 K양의 어머니와 같은 성씨를 가졌으니 한 집안이라며 같이 가자 하여 동행했는데 집에 오면서도 아버지는 낙태수술을 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노인회관 2층으로 자리를 옮긴 후 K양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했다며 K양의 현 상황을 얘기하였다. 그 내용은 H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일단락되면서 K양은 H씨의 계속적인 연락과 마을주민들의 사건 재범 우려와 '너만 없었으면' 하는 원망 등으로 인해 옥계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때 K양의 사연을 우연히 알게 된 태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씨라는 한 여성이 K양에게 결혼주선 및 일자리를 줄 것과 아기는 본인이 입양할 것이며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K양의 부모님과 약속(?)하여 K양을 태백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K양은 1월 8일 태백의 황지병원에서 여아를 순산하였다.

아버지는 H씨와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합의)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며(아무도 알려주지 않음) 그냥 200만원을 받으면서 K양과 함께 합의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가해자 모두를 처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줘. 고발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K양의 직접적인 진술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현재 있는 곳을 물었으나 부모님은 K양을 보호하고 있다는 태백 L씨의 연락처를 쉽게 알려 주지 않았고 L씨에게 물어 보고 알려준다고 하여 그러기로 하였다.

이 사건을 강릉여성의전화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자 그렇게 해달라고 답했으며 2월 13일 부모님과의 면담에서도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3)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계장과의 면담 및 첫 고소사건 결과

1월 10일, 여성신문사 박이은경 기자, 최은경, 황옥주는 K양 사건을 담당하던 조사계장을 만나게 되었고, K양이 H씨에 대해 고소되어진 사건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물음

에 담당조사계장은 가해자 H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되나 형법상 처벌할 연관된 법이 없었으며 겨우 형법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접근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K양의 심신미약자임을 인정하더라도 가해자의 위계 또는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그 후 쌍방의 합의로 인해 고소 취하되어 12월 22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 처리사유 : 피고소인 H에 대해서 수사한 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함.(12/27소인)
* K양의 조사과정에 대해선 일반인과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경찰서에서의 조사에 대한 K양의 입장은 묻는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대답안한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에서 아버지와 H씨가 합의를 이유로 소리 질러 싸우는 과정에 경찰이 나가서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리곤 K양과 H씨는 대기실에서 200만원 합의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한다.

3. K양과의 첫 만남

1월 11일, K양을 보호하고 있다는 L씨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본인이 "이 사건을 법으로 해결하겠다" "난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안다. 내가 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등 흥분하며 전화를 받더니 전화도중 끊어버려 연결이 쉽게 안되었다. 하루에 여러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시도, L씨를 설득하여 K양 있는 곳을 알아 냈고, 1월 13일 K양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아버님과 막내오빠, 최은경, 황옥주 총 4명은 L씨가 운영한다는 식당을 방문하였다. 식당 주방 옆 창고로 쓰여진 듯한 1평도 안되는 작은 골방에 태어난지 3일된 아기와 생활 하고 있었다. 일행은 K양과 대화를 하기위해 L씨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이 사건의 심각성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한 시간 정도 설득해야 했고 겨우 K양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L씨의 큰소리로 강요되는 듯한 진술 요구 등으로 인해 K양에게서는 H씨의 횡포와 K양이 애기를 키우고 싶다는 정도의 대화만 할 수 있었다. 두시간 후 L씨는 남편이 올 시간인데 알면 큰일난다며 우리 일행을 쫓아 내듯 하여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태백을 방문한 일행은 L씨의 "동네에서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력한 사건이 있었는데 6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K양의 경우 200만원의 합의는 말도 안된다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언행들이 K양을 처음 데리고 갈 때와 일치하지 않으며 K양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등으로 보아 브로커(broker)로 의심하게 되었고 K양이 태백에 있음이 위험할 수 있을 것을 절실히 느껴 부모님을 설득하여 하루 빨리 강릉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K양과 아기를 옥계 집으로 보내는 데에는 또 다른 위험이 따를 것을 우려하여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보게 되었고, 모자원 입소가 가능한 것

을 확인하여 우선 자리가 날 때까지 긴급 피난처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모님에게 사건의 해결을 위해선 K양이 강릉으로 와야 함을 설득하여 1월 19일 강릉여성의전화 최은경은 K양과 아기를 강릉으로 급히 데리고 왔으며 긴급피난처에 일시 입소시켰다. K양이 산후조리가 필요함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어머님도 함께 입소하였다.

4. 신경정신과 심리평가 결과

K양과 부모님의 장애유무를 확인하기위해

1월 20일, 동해 영동병원에 K양은 하루 입원, 부모님은 몇시간의 검사를 거쳐

1월 21일, K양은 IQ51인 정신지체(초등1~2학년)에 해당하며 사고력과 판단력 등 지적능력의 제한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K양의 아버지는 IQ68인 정신지체(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며 분석, 통합,계획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의 제한이 현저함.

K양의 어머니는 IQ66인 정신지체(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며 고차원적 통합, 종합능력의 제한, 주변상황의 분석 및 파악 능력의 제한이 현저함으로 심리평가결과 부모님과 K양은 모두 정신지체로 임상적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두 오빠들은 검사를 받은건 아니지만 유전적환경 및 주민의 진술등으로 보아 정신지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5. K양의 성폭력 피해

피해자 K양은 80년 생으로 중학교를 98년에 졸업하였고 가족 구성은 4남1녀중 막내이며 현재 부모님과 2명의 오빠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

H씨로부터 결혼상대로 소개받은 동해의 한 미혼 남자(K양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함)는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달라"며 부탁을 받게되고 K양의 부모님은 살아보고 결혼시키겠다고 하여 동해로 보내 사실혼에 있게 되었다. 그러던 99년 10월 1일, K양은 사실혼 4개월에 감기가 약국약으로 잘 낫지 않아 시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임신 7개월이 확인되었고 그 날 저녁에 옥계로 쫓겨오게되었다.

1월 19일부터 시작된 K양과의 상담을 통한 피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씨(74세)에 의한 성폭력

K양이 초등학교 6학년(6학년을 두 번 다녔다고 함)때 H씨에게 밤따러가자며 밤나무산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우산을 줄테니 가져가라" 등의 물품과 3~4천원의 돈으로 유인하여 H씨의 집, K양의 빈집, 야산, 비닐하우스, 소사료실, 동네 빈

집, 뽕밭, H씨의 가게(남양가든), 여관 등에서 1999년 10월 2일까지 7년동안 성폭력당했다. H씨는 콘돔을 사용했으며 가끔 피임약을 먹였다(약이쓰다라고 말함). H씨가 K양의 손목을 잡고 뽕밭쪽으로 가는 장면은 학교 소사 아저씨와 선생님이 목격한 적도 있다. (당사자들 성폭력하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다며 PD수첩에서 인터뷰함)

H씨는 수시로 늦게까지 K양의 집에서 TV를 보고 가며 이상한 눈짓을 하는 등 수시로 K양을 찾아왔고 하루에 서너번의 관계도 요구했다.

K양은 H씨로 인해 두 번의 임신을 하였는데 동해영동병원에서 폐결핵진단을 받으며 새끼 손가락만하다는 태아를 하얀좌약으로 낙태(94년으로 추정/고모와 어머니 동행), 두 번째가 H씨와 동행한 강릉현대병원(병원 위치만 알고있었음)에서 낙태를 했는데 입구에서 H씨가 K양의 아버지를 따돌리고 낙태를 한 뒤 어머니와 K양을 여관에 데리고 가 볼일(?)을 본 후에 아버지를 만나 옥계로 왔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혼에 있는 K양을 수시로 불러내기도 하였다.

최근의 성폭력은 10월 2일, K양이 옥계로 온 것을 안 H씨가 동해의 한 여관으로 K양을 데리고 가서 성폭력을 한 뒤 피임약을 먹도록 강요하였다.

더한 것은 마을남자들과의 술자리에서 " 할망구랑은 잘되냐?, 잘서냐?, K양은 돈만주면 잘 자더라, 니들도 해봐라"는 등의 권유(?)를 하여 제 2의 가해자들을 만들어 제2의 범죄를 구성하였으며, K양에게도 "누구랑도 자봐라"며 세뇌시켰다.

평소에도 콘돔을 패스포드병에 끼워 택시기사들에게 본인의 성욕이 왕성함을 자랑하였다(마을주민)

(2) L(59세)씨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L씨는 95년경 K양의 집 앞산으로 K양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그 후 야산과 L씨의 집 등에서 십회 이상의 성폭력을 했다.

(3) KN(64세)씨에 의한 성폭력

중학교 하교하는 K양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했다. K양은 1회 성관계 갖은 것으로 진술.<3/16 검찰조사결과 97년으로 추정>

(4) KS(55세)씨에 의한 성폭력

본인의 가게에 맡겨진 K양이 얇은 옷을 입어 젓가슴이 비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에 가만히 있는 K양에게 연애경험을 묻고 긍정적 반응이 나오자 K양을 삼일에 한번 꼴로 밖으로 유인하여 본인의 갤로퍼차안에서 성폭력을 했다.

(5) LJ(30대)씨에 의한 성폭력

K양이 98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양집안에 혼담이 오가는 중 LJ씨의 집에 자주 놀러 간 K양은 몇번의 관계를 가졌다.

(6) H씨에 의해 알려진 2명의 가해자(LD씨, LS씨)

K양과의 상담 중 나머지 2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성폭력 가해자 5명 연대 고발

2월 1일, 오전 11시 강릉여성의전화를 비롯한 28개 단체의 이름으로 가해자 5명을 성폭력특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 및 담당검사와 면담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에 강릉역광장에서 공대위 70여명과 함께 피켓팅, 유인물배포 등의 가두 시위를 벌였다.

7. 검찰조사결과(3/16)

H씨와 L씨-불구속기소/불구속사유(노환, 이전 합의사실)
KS씨-기소중지, 수배
LJ씨-K양과의 관계는 혼담이 오가는 중 있었던 관계이며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행위가 인정안됨.
KN씨-97년 성관계 인정, 성폭력특별법 제 8조 개정이전의 범죄이므로 법 적용불가.

8. K양과 아기의 상황

K양은 1월 19일 긴급피난처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던 중 외부에 노출되어 강릉여성의전화 회원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장기적인 보호가 어려웠고, 자활이 어려운 대상이므로 모자원 입소조차 힘들게 되었다. K양과 아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알아보던 중 한 장애인 그룹홈을 소개받게 되어 1월 28일 아기와 함께 입소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휴유증이 노출되는 등 시설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계속적인 생활이 힘들어졌고 2월 2일 K양과 아기는 옥계 부모님집으로 보내졌다. 곧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K양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지체여성을 위한 그룹홈을 소개받았고 3개월간 무료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기와 동행할 수 없음으로 아기는 강릉의 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일시 위탁되었다. K양은 현재 서울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정신지체여성을 위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직 아기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K양은 본인에게 나쁜 짓 한 가해자들이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감옥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H씨의 내력서를 마을에 게시한 후에 K양은 "집밖을 나가고 싶어도 갈데가 없고 마을사람들이 무서웠다"(여성신문)고 말한다.

"다신 내게 나쁜 짓 못하도록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 모두 다 올 가을까지, 아니 다음 겨울까지 감옥에 가 뒤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H씨를 보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갈래요. 그리고 날 보기 전에 먼저 피할거예요." (여성신문)

9. 기타

H씨를 상대로 K양의 어머님이 고소한 사건
- 1/22 K양 어머님은 H씨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간당했음에 고소.(K양 1회 목격)
- 2/14 K양 어머님 경찰조사<큰 아들 동행>
- 2/16 사건종결(H씨 무혐의)

K양 어머님 말에 의하면 강간당했음을 강조하였으나 결국에 도장을 찍으라 해서 찍었다고 한다.

담당형사는 K양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음과 "대질하면서 그 여자 분이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강간 당하지 않았다고 자백을 했었기 때문에, 진술을 받고 그러면 고소를 취소할 것이냐고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본인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고소장을 제가 대필해 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 대필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 취소한 것을 대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보라고 저건 안 들구요. 시골 촌부다, 그 사람들이 꼭 모자란다고 저는 잘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K양 어머니의 고소사건은 3회이상 강간당했음이 사실(사건발생시기는 잘 모르지만)이라는 점과 가해자 H씨를 보다 처벌(괴롭히기)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K양 사건 진행을 위해 중단키로 하였음.

10. 여론화

여성신문사-1월 초 사건 제보부터 관여하여 1/14, 1/28, 2/11, 2/18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갔으며 k양을 돕는 기금마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MBC-강릉mbc 강원세상 1/28(15분), pd수첩 2/1(60분), 3/28(30분) 방영

언론사-강릉신문(최초보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장애복지, 장애인신문 등 보도

인터넷-3/8개설 http//:cafe.daum.net/kimrape/ 를 운영, 사이버 여론화 및 의견모음.

정기화요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기자회견

11.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편견
-조사기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방법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폭력 처벌규정의 한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상담/치료 받을 수 있는 전문 쉼터의 부재
-가족모두가 정신지체임이 의심되는데 장기간 사회복지혜택으로부터 방치된 점, K양 지속적인 성폭력 노출 등

12. 활동일지

-1/04, 강릉여성의전화 사건접수(여성신문-한국여성의전화연합)
-1/08, K양 아이출산(태백황지병원)
-1/10, 사건현장 방문(여성신문사, 강릉여성의전화, 좋은친구선교회)
-1/21, K양(부모님) 정신지체임이 임상 추정
-1/28, 28개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차 대책회의를 가져 1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을 성폭력특별법 재 8조에 의해 가해자 5명을 고발, 담당검사와 의면담, 가두시위 결정.
-2/02, 검찰 가해자 5명 고발, 70여명 가두시위
-2/14, 증거물 제출 및 검찰조사(대리 진술 황옥주)
-2/16, K양의 아기 강릉 영유아보호시설 일시위탁
-2/17, K양 검찰 조사(황옥주, 정순교 동행)
-2/18, K양 서울 그룸홈 입소
-2/21, 2차공대위 회의를 거쳐 공동대표 4인(강릉여성의전화 정순교, 강릉ywca 정의정, 강릉오성학교부모회 김경희, 남양1리 부녀회장 유재화)이 선출되었으며, 가해자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요구위한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결정.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 검토.
-2/25, 2/29, 3/6 공동대표자회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가해자 엄중처벌위한 결의대회로 변경 추진되었으며 3/19로 확정.
-3/11, 3/14 공대위 모임을 통해 결의대회 실무자들이 선정되었으며 아직까지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옥계에서 보다 많은 힘을 모으기 위해 3/19(일) 옥계장터로 결정.
-3/12, 38세계여성대회 제16회 한국여성대회 99여성인권디딤돌 수상(남양1리주민-장애여성성폭력추방운동을 통한 여성권익향상)
-3/16, 검찰에서 가해자 5명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3/19, 정신지체장애여성성폭력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위한 결의대회, 갑작스런 우

천으로 연기.

-3/19, 3/20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k양성폭력사건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위한 기지회견을 3/22 하기로 결정.

-3/22, 강릉문화의집 오후 1시 기자회견(가해자 구속 및 엄중처벌), 이 후 사건 대응방향 발표.

-3/29, 정기화요서명작업시작-강릉여성의전화, 강릉신영극장 앞에서 서명작업<총 499명>

-4/04, 정기화요모임 서명 - 반부패강릉연대 272명 서명

-4/07, 전국 여성의전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담당판사에게 진정서 제출. 서명 771명, 인터넷(PD수첩)에 올라온 의견 60건 법원에 제출.

-4/11, 정기화요모임 서명 - 강릉YWCA 240명 서명

-4/15,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 성폭력 토론회<장애여성공감 주최>

-4/17, 장애여성 성폭력 실태 및 대책 마련 토론회<강릉여성의전화, 좋은 친구선교회 주최>

-4/18, 장애여성성폭력 공청회<공동주최>

* -4/20, 가해자H씨, L씨에 대한 1심공판 오후 2시 강릉지원 1호법정.

정신지체장애여성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4/12현재 53개 단체)

강릉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연합(22개지부), 강릉YWCA, 강릉YMCA, 강릉오성학교부모회, 영동정신지체부모회, 옥계면남양1리주민, 농아인협회강릉지부, 강원DPI, 기독교윤리실천운동강릉지부, 좋은친구선교회,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반부패강릉연대, 참여자치강릉연대, 강릉경실련, 강릉지체장애인협회, 동해YWCA, 속초YWCA, 원주YWCA, 춘천YWCA, 동해종합사회복지관,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성가족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장애여성공감,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정신지체인 성폭행 사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례 1.

- 성　　명 : 최영주(가명)
- 나　　이 : 사건당시 22세
- 장애유형 및 등급 : 정신지체 3급
- 사건개요 :

1996년 당시 나이 22세인 최영주씨(가명)는 정신지체3급으로 그룹홈에서 거주하면서 낮에는 인근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생활로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비록 정신지체인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던 최씨가 어느 날밤 그룹홈에 귀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룹홈 지도교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튿날 외박을 하고 돌아온 최씨를 달래어 외박의 이유를 듣게 되었다.

최양이 출퇴근하던 직장 인근의 한 노동자가 최양에게 평소 친근하고 호의적으로 대했고 그날따라 최양에게 '술한잔 하자'고 권유받았다고 한다. 그 말을 믿고 포장마차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최양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그룹홈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은 정신지체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사건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에 그룹홈 선생님이 오히려 주위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곧 가해자를 찾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좋아했다'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

경찰에서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들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였고,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와 합의함으로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사례 2

- 성　　명 : 박선희 (가명)
- 나　　이 : 사건 당시 18세
- 장애정도 : 정신지체 3급
- 사건개요 :

박선희(가명)씨는 정신지체인3급으로 당시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었다. 학교를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며 박선희씨에게 평소 호감을 표시하던 아저씨가 '집에 놀러가자, 맛있는거 줄께' 라는 말을 믿고 집으로 유인되어 폭행을 당했다.

귀가한 박선희씨의 외형을 보고 부모들은 그 즉시 폭행사실을 알게되었지만 동네에 그 사건이 알려지면 오히려 박선희씨에게 사람들이 던질 따가운 시선이 염려되어 가해자에게만 주위를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부 록

성폭력 특별법(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적자유 및 건전한 성도덕감정을 보호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제292조(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 미수범 및 제 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4.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② 제1항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특수강간 등)

①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

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등)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한다.

제17조(보호감호)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 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신고의무)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

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그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30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상담소·성폭력 피해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단체 연락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우) 100-451
Tel : 02)2269-2962 Fax : 02)2237-1028 E-Mail :women@hotline.or.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A호 (우) 110-470
Tel : 02)3675-9935 Fax : 3675-9934 E-Mail : kdawu@hanmir.com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 137-600
Tel : 02)576-7128 Fax : 02)576-7127 E-Mail : ksvrc@chollian.net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보이스카우트 빌딩 3층 (우) 150-010
Tel : 02)783-0067 Fax : 02)783-0069 E-Mail : hanjc21@chollian.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1층 (우) 137-061
Tel : 02)521-5364 Fax : 02)584-7701 http://cowalk.or.kr